서울특별시 중구 공고 제2021 - 680호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 성지 역사 박물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중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1년 9월 일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 성지 역사 박물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서소문성지 역사박물관 내부 시설 대관 수요 증가에 따라 대관을 종류별, 사례별로 세분화하고 대관 현광에 맞는 현실적 대관으로 박물관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박물관 내 시설사용 요금표 개정 및 시설 추가(별표 1)

- 대관 수요의 양적 증가, 대관 종류와 성격의 다양화에 따라 종류별, 사례별로 세분화
- 박물관 대관 가능 시설을 추가(2곳)하여 이용자의 선택의 폭 넓히고 대관 수익 창출로 박물관 운영 부담 감소

3. 의견제출

○ 조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는 2021년 9월 2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울특별시 중구청장(**참조 : 문화관광과장, 주소 :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 387(흥인동, 충무아트센터), 문의전화 : 02-3396-4622, FAX: 02-3396-8621, 전자우편 : khj05@junggu.seoul.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첨부 :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성지 역사박물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

서울특별시 중구 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 성지 역사 박물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 성지 역사 박물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1]

서소문성지 역사박물관 내 시설 사용료 (제19조 관련)

연번	시 설 명		면적(㎡)	1회 이용시간	금 액(원)		비고
					현 재	개 정	
1	교육 강당 (지하1층)		210.23	반 일	250,000	250,000	
				전 일	500,000	500,000	
	현수막 게시대			회	-	30,000	
2	기 획 전시실	지하1층 (복도)	446.67	전 일	-	600,000	
		지하 2층	310.63		500,000	500,000	
		이동형가벽	1개·1일		-	10,000	
		진입광장 현수막	설치·철거		-	500,000	
			거치비/일 (6,000×6,500)		-	20,000	
		TV모니터	65인치		-	20,000	
3	소강당 (지하2층)		112.87	반 일	170,000	170,000	
				전 일	250,000	250,000	
4	콘솔레 이션홀 (지하3층)	공 연	966.45	전 일	2,500,000	2,500,000	
		촬 영			-	3,750,000	
		4면 영상			-	1,000,000	
5	하늘광장 (지하3층)	공 연	934.65	전 일	2,000,000	2,000,000	
		촬 영			-	3,000,000	
6	하늘길		-	전 일	-	1,875,000	
7	대기실 (지하3층)		-	전 일	-	500,000	

※ 1. 사용료는 평일을 기준으로 한 것이며, 사용시간은 전일시간(09:30~17:30), 반일시간(09:30~13:30 / 13:30~17:30)임.

2. 1회 사용 기준시간 미만 사용한 경우 1회 사용으로 하고, 초과시간은 1시간 미만일 경우 기본사용료의 10%, 1시간 이상 2시간 미만일 경우 기본사용료의 15%, 2시간 이상 3시간 미만일 경우 기본사용료의 20%를 할증.

3. 심야(20:30~24:00) 및 새벽(00:00~06:30) 시간은 기본사용료의 30% 할증.

4. 휴관일(09:30~17:30)은 기본 사용료의 30%를 할증하되, 제2호 및 제3호가 중복될 경우는 추가 할증.

5. 사용 성격과 기간에 따라 박물관의 내부규정으로 30%범위 내에서 조정 가능.

6. 1주일 이상 사용시 휴관일은 제외하며, 위의 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지 않은 금액임.